##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(한기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1137

발의연월일: 2021. 6. 28.

발 의 자:한기호·박대수·이채익

정운천 • 백종헌 • 유의동

추경호 · 김석기 · 윤창현

김성원 • 태영호 • 이철규

의원 (12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「군인사법」 제37조 3항의 '전투 또는 작전 관련 훈련 중다른 군인에게 본보기가 될 만한 행위'로 인하여 신체장애인이 된 군인의 경우 군무원 경력경쟁채용이 가능하게 하고 있음. 그러나 실제로이를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이 거의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음.

실제로 상이 정도 미달로 국가유공자 등록이 되지 않은 서해수호 장병들의 경우 전투 중 다른 군인에게 본보기가 될 만한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있으나, 신체장애인이 아니기 때문에 군무원 경력경쟁채용 응시가 불가능함.

이에 전투 또는 작전 관련 훈련 중 다른 군인에게 본보기가 될 만한 행위를 한 군인은 그 신체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군무원을 지원할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(안 제7조제2항제9호).

법률 제 호

##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군무원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2항제9호 중 "행위로 인하여 신체장애인이 된 군인"을 "행위를 한 군인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 정 안
제7조(신규채용) ① (생 략)	제7조(신규채용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	2
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	
에는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	
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	
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	
하는 시험(이하 "경력경쟁채용시	
험"이라 한다)으로 군무원을 채	
용할 수 있다.	
1. ~ 8. (생 략)	1. ~ 8. (현행과 같음)
9. 복무 중에 「군인사법」 제37	9
조제3항의 행위로 인하여 신체	<u>행위를 한 군인</u>
<u>장애인이 된 군인</u> (예비역 군인	
을 포함한다)을 군무원으로 채	
용하는 경우	
10. (생 략)	10. (현행과 같음)